

검 토 보 고

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

- 동 조례안은 1998년 7월 16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4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음.

□ 제안이유

-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, 시행중인 「파주시지명위원회조례」상의 “파주시지명위원회”는 심의·결정할 지명의 범위에 지방자치법상의 읍·면·동의 명칭을 제외하고 있으며, 또한 도로, 가로, 거리, 교량등 주민과 밀접한 공공시설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
- 동 조례를 폐지하고 측량법상의 지명은 물론 읍·면·동의 명칭과 도로, 가로, 거리, 공원 등의 공공시설 명칭을 모두 포함하여 이를 심의·결정하기 위한 “파주시 지명위원회”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
- 새로이 「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안」을 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지명등의 범위에 읍·면·동·리의 명칭 및 측량법에 의한 지명과 도로, 가로, 거리, 교량, 공원등의 공공시설 명칭을 포함함 (안제2조).
- 나. 지명등의 명명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해 “파주시지명위원회”를 둠 (안제4조).
- 다.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함 (안제5조 제1항 및 제2항)

라.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인 이상으로 함
(안제5조 제3항)

1. 관계공무원
2. 지명등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마.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함 (안제8조)

1. 지명등의 명명
2. 공공시설등의 명칭의 명명
3. 지명등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
4. 기타 지명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

바.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. (안제12조)

사. 시장은 지명등을 명명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여야 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함
(안제13조 및 제15조)

아. 시장은 지명등의 명명이 결정되면 그 사항을 시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날부터 공식 명칭이 됨(안제18조)

자.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「파주시지명위원회조례」를 폐지함
(안 부칙 제2항)

□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측량법에 의한 지명을 심의하기 위해 제정된 「파주시지명위원회조례」상의 “파주시 지명위원회”에서 심의·결정하는 지명의 대상에 읍·면·동·리의 행정구역 명칭과 도로, 가로, 거리, 교량, 공원, 운동장등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명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